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명	페이지
2022-130	경남연구원 출연안(기획예산담당관)	1
2022-131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7
2022-132	'23~'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21
2022-133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35

경남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22 - 13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에 2023년도 출연금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출연대상 : 경남연구원
- 사업내용
 - 민선 8기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한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 전략사업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자문
 - 현안사업 해결형 전문가 집단 구성 및 포럼 등

나. 출연금 요구액 : 50,000천원

- 2023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군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3년	-	50,000천원	50,000천원	0	0	50,000천원	

다. 부서의견

- 지역현황에 밝은 “경남연구원”의 노하우를 통해, 군의 주요 당면과제 및 전략사업 실행방안 마련으로 지역 성장 도모코자 출연금 지원 필요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4. 참고사항

- 경남연구원 현황

2023년 경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코자 함

□ 출연개요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 출연기관 : 경남연구원

○ 출연금액 : 50,000천원(군비)

○ 주요 사업내용

- 민선 8기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한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 전략사업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자문
- 현안사업 해결형 전문가 집단 구성 및 포럼 등

□ 부서의견

- 경남연구원을 활용하여 민선 8기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거창군 전략사업 실행방안 마련 발굴 및 공모 등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기관 현황 】

(경남연구원)

□ 설립목적

- 경상남도 도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도정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 및 연구활동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경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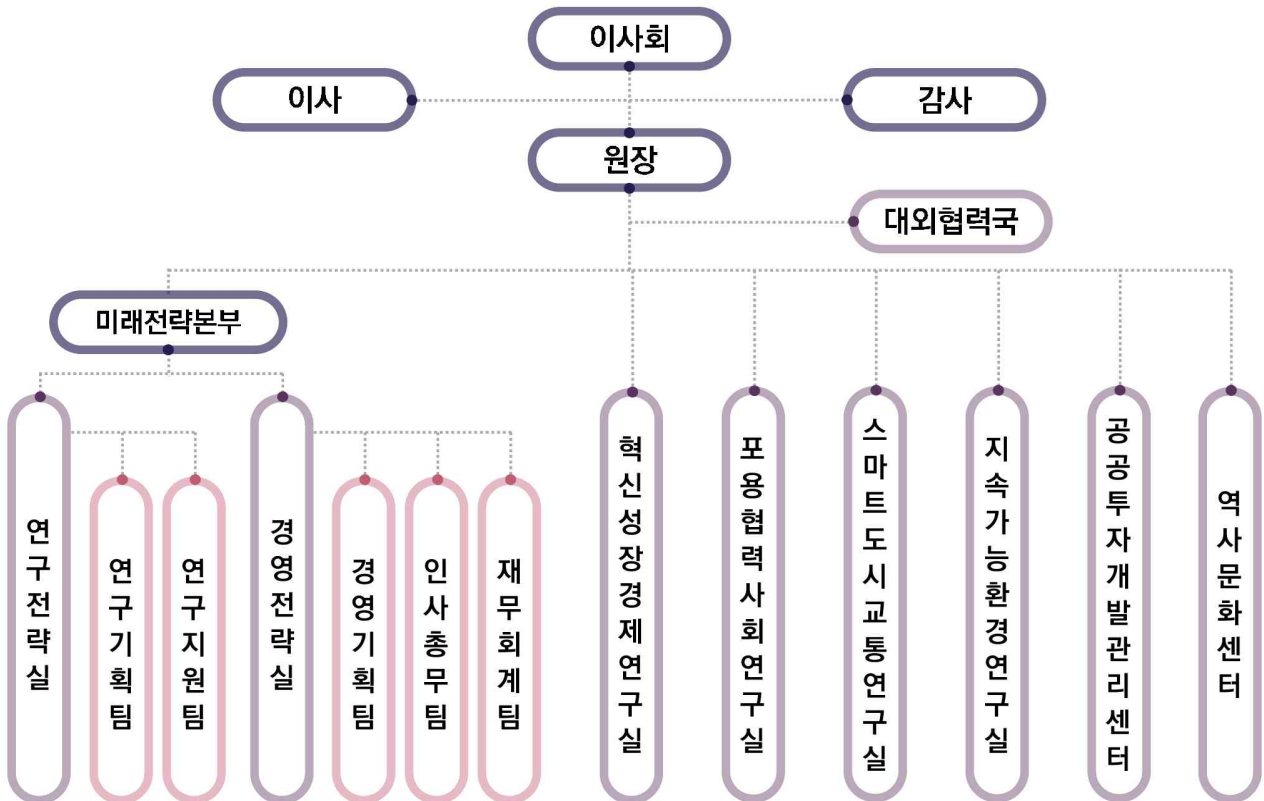
□ 연 혁

- 1992. 7. 18. : 재단법인 설립 허가
- 1992. 8. 5. : 재단법인 설립 등기
- 1992. 12. 10. : 경남개발연구원 개원
- 2000. 3. 8. : 경남발전연구원 명칭 변경
- 2019. 7. 15. : 경남연구원 명칭 변경

□ 주요기능

- 경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 자치분권과 경남지방정부 발전 연구
-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연구·개발 및 미래 첨단신기술 전략 연구
- 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관광·농어촌 분야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 재정·민자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조사·연구
-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강화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 경남의 열 고취 및 역사문화 정책개발과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 지역발전을 위한 국내 및 국외 협력 강화와 관련 연구
- 기타 연구원 고유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조직 현황(원장, 1본부, 연구실(6실 2센터), 1국)



부설센터

• 자체운영을 위한 설립 센터(3개)

시군협력센터, 데이터리서치센터, 경남학연구센터

• 지정보조사업 운영을 위한 설립 센터(10개)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경상남도 청년센터, 경상남도 청년일자리플랫폼,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경상남도 농어업정책센터,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연구원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5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2. 4.] [경상남도조례 제4906호, 2021. 2. 4., 일부개정]

제5조의2(운영재원) <본조신설 2019.6.7.>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2 - 131
----------	------------

제출자	거창군수
-----	------

① 감악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감악산 정상 부근은 대부분 사유지로 감악산웰니스체험장,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사용동의 또는 임차료 지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토지매입 필요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신원면 구사리 산 11 등 2필지
- 사 업 비 : 808백만원(토지보상 2필지)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 대지면적 : 483,736㎡
- 사업내용 : 무장애나눔길 2.61km 조성 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용도지역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공시지가 (원/㎡)			
계				483,736	483,736		196,679		
취득	토지	신원면 구사리 산11	임	125,355	125,355	370	46,381	2023	보전관리 지역
취득	토지	신원면 구사리 산12-1	임	358,381	358,381	390	150,298	2023	보전관리 지역

다. 추진경과

- 2021. 1월 ~ 4월 : 토지 소유자 면담 및 매입 등 협의
- 2022. 5월 : 토지사용 동의서 접수 완료(사유지 5필지)
- 2022. 9월 : 무장애나눔길 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라. 향후계획

- 2022. 10월 ~ 12월 : 1차년도 사업완료
- 2023. 1월 ~ 12월 : 숲 체험 및 쉼터 등 2차년도 사업시행
- 2023. 8월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
- 2023. 9월 : 토지보상 및 등기 완료
- 2024. 1월 ~ 12월 : 전망대 쉼터 등 3차년도 사업시행 및 완료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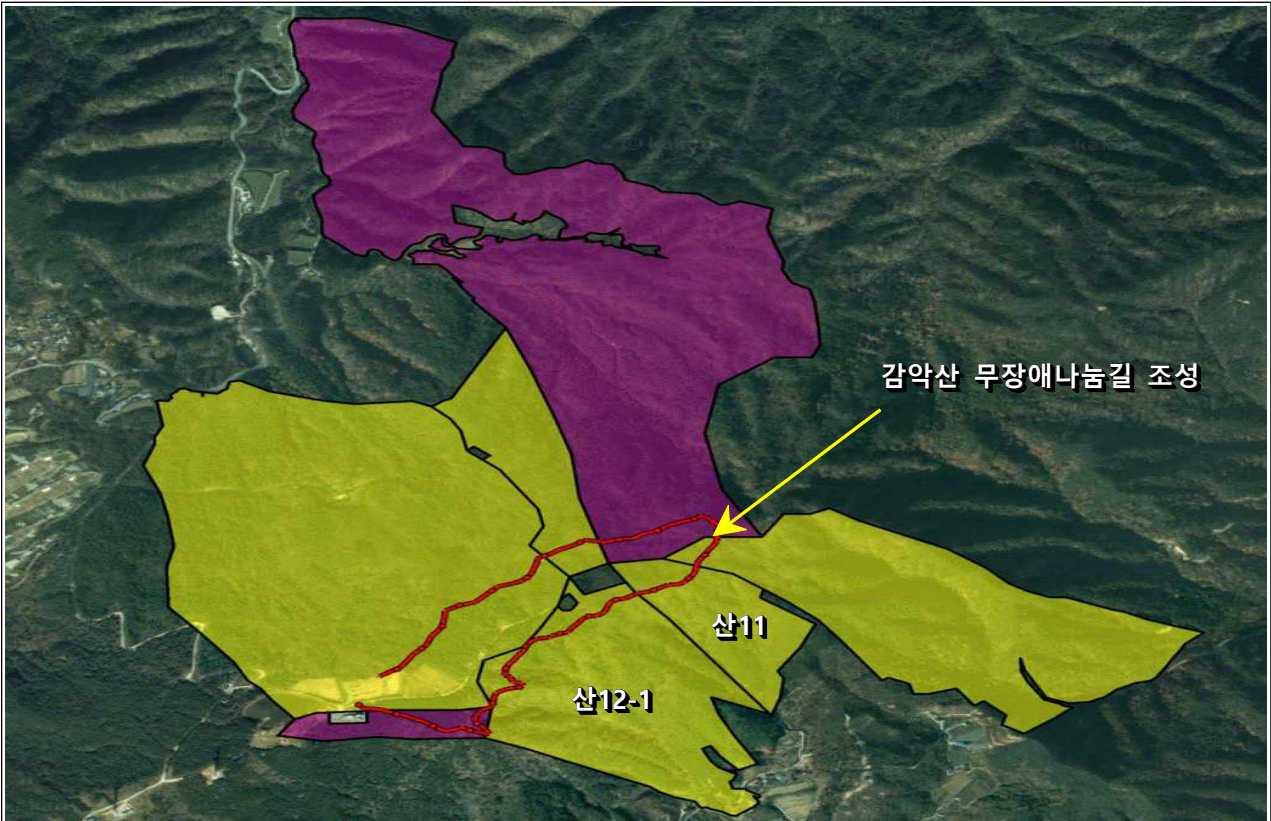
-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통해 감악산 무장애나눔길을 거창의 관광명소로 도약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치유·힐링 쉼터 제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2호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전경도 : 신원면 감악산 정상 부근(신원면 구사리 산11 등 2필지)



전경도 : 신원면 구사리 산 11, 산 12-1 전경



지적도 : 신원면 구사리 산11 등 2필지

② 고제면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사업

1. 제안이유

- 고제면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소방 수해 사각지대로 화재 재난 발생시 신속대응이 어려워 인명재산 피해 증가 우려
- 지역민(의용소방대 등)들의 소방관서 설치 요구 증가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계획 중이며 군 부지제공 협조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4.
- 위 치 : 고제면 소재지(고제면 농산리758-1)
- 부지매입비 : 300백만원 정도
- 총사업비 : 8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부지매입	청사건축	소방차량	보호장비	소집수당	운영비
거창군	300	300	-	-	-	-	-
소방서	536	-	340	160	3	29	4

※ 군에서 부지매입 및 무상임대 계약 후, 건축, 장비, 운영은 소방서에서 추진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천원)

구분	지번	면적 (m ²)	지 목	공시지가 (원/m ²)	기준가격 (천원)	용도지역
취득	고제면 농산리 758-1	1,806	답	41,500원	74,949	계획관리 지

다. 추진경과

- 읍면 초도순방 시 고제면 119지역대 유치 건의 : 22. 1. 25.
※ 고제면 의용소방대장 건의
- 건의사항 전달(거창군→거창소방서) : 22. 2. 15.
※ 거창소방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대 및 지역 안전센터 설치 불가 회신
- 전담의소대 설치건의(고제면의소대 → 거창소방서, 고제면) : 22. 4월

- 부지매입 협조요청 공문 발송 (거창소방서 → 거창군) : 22. 7. 27.
- 부지매입계획 보고 및 방침 : 2022. 8. 3.

라. 향후계획

- 2023. 1. ~ 3. : 부지매입 및 무상임대 계약(거창군→소방서)
- 2023. 3. ~ 6. : 건축시설비, 운영 장비, 차량 등 예산 신청(소방서→도)
- 2023. 9. : 공사착공(거창소방서)
- 2024. 4. : 공사준공 및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거창소방서)

마. 기대효과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로 화재 및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초동 대응 가능
- 초동대응력 상승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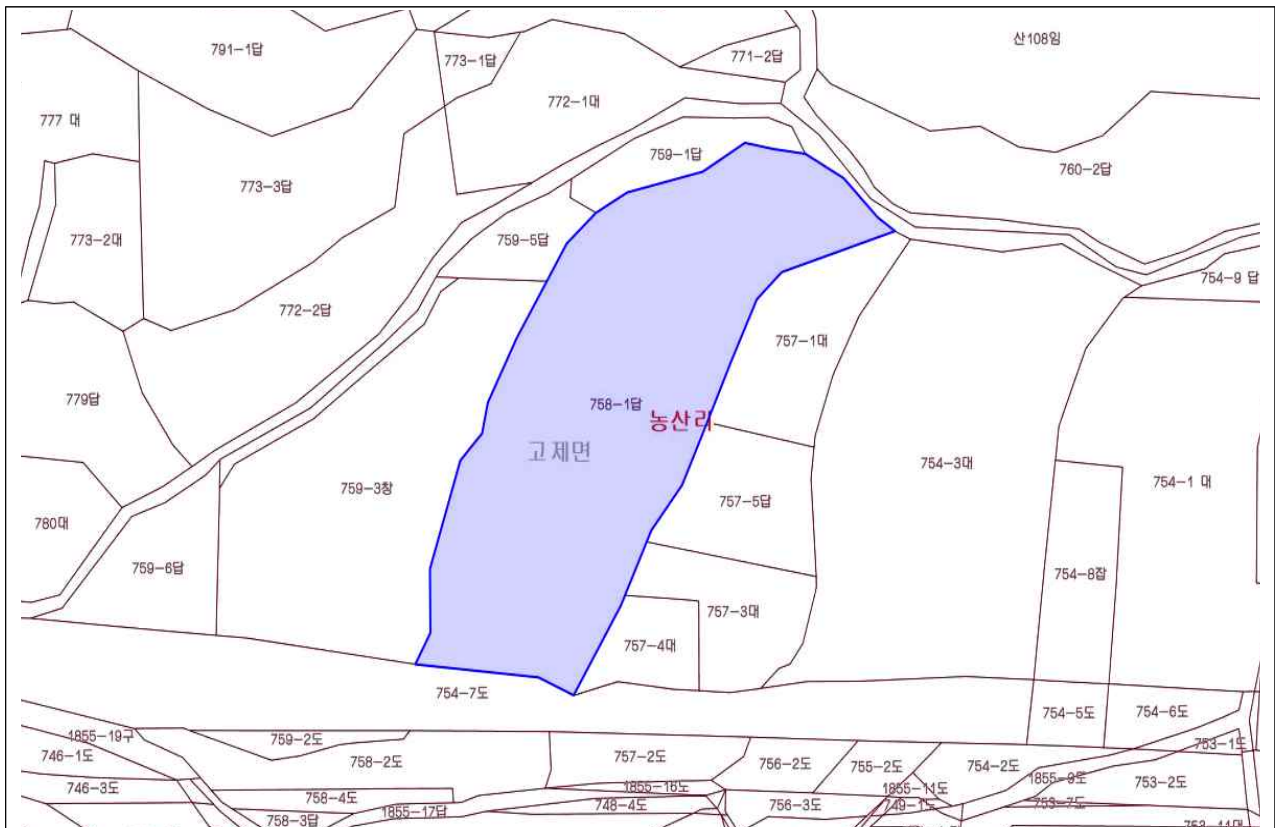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전경도 : 고제면 농산리 758-1



지적도 : 고제면 농산리 758-1

③ 감악산 별바라기 언덕 조성 사업

1. 제안이유

- 감악산 별바라기 언덕 조성과 감악산 산림관광 지구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17번지 외 12필지
- 취득면적 : 1,844,438㎡정도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12월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지방비 3,500)
- 내 용
 - 감악산 산림휴양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산림 치유의 숲(80ha), 숲속야영장(25ha) 조성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기타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1,844,438	4,724,582			
취득	토지	신원면 덕산리 산13-1	임야	68,838	4,724,582	2023	감악산 별바라기 언덕 조성	
		신원면 덕산리 산13-14	임야	1,920				
		신원면 덕산리 산13-15	임야	27,075				
		신원면 덕산리 산13-16	임야	1,767				
		신원면 덕산리 산13-17	임야	701,840				
		신원면 덕산리 산13-18	임야	128,659				
		신원면 청수리 산2	임야	520,783				
		신원면 청수리 산2-5	임야	176				
		신원면 청수리 산2-7	임야	18,603				
		신원면 과정리 산146	임야	82,314				
		신원면 과정리 산150	임야	277,040				
		신원면 과정리 산150-1	임야	14,823				
		신원면 과정리 산150-2	임야	600				

다. 추진경과

- 21. 12월 : 감악산 및 주요명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행
- 22. 9월 : 감악산 및 주요명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라. 향후계획

- 22. 11월 : 감악산 및 주요명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준공
- 23. 1월 : 감악산 별바라기 언덕 조성 타당성 용역 시행
- 23. 3월 ~ 7월 : 토지 매입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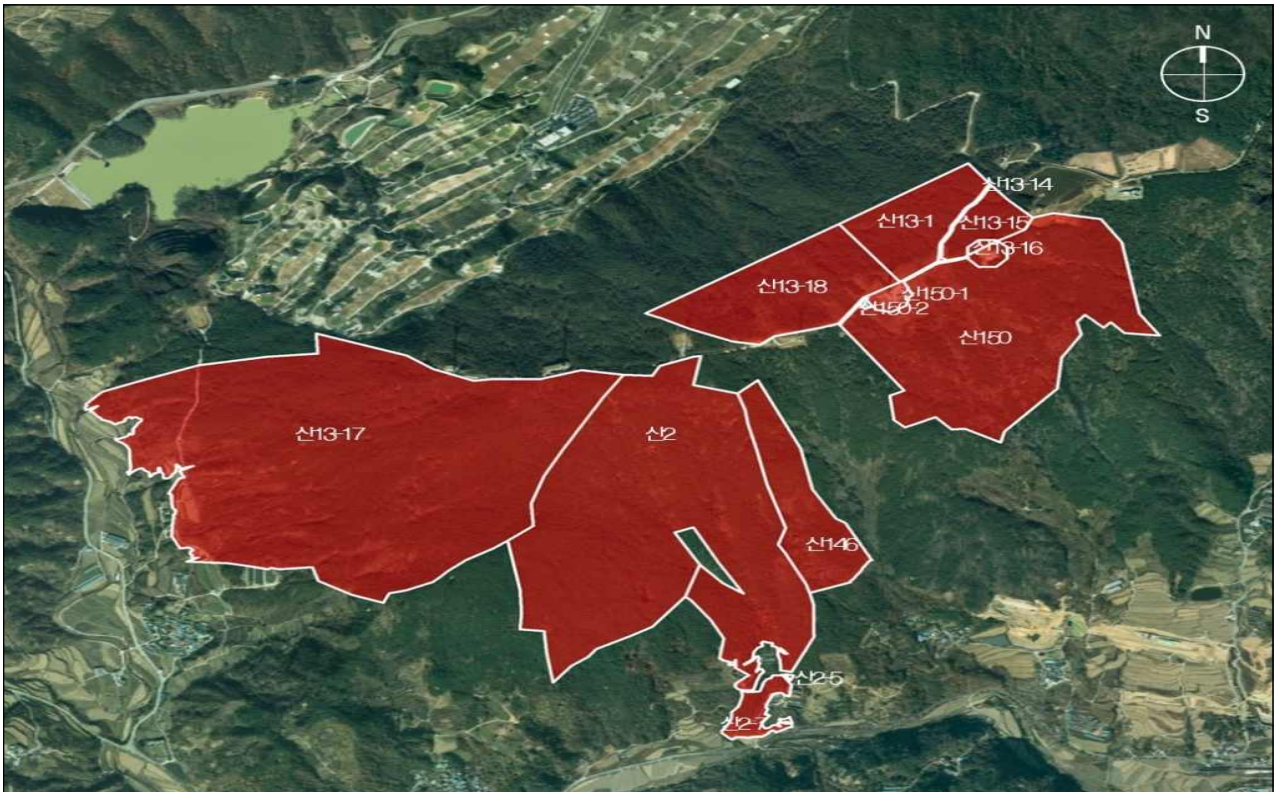
- 마스터플랜의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로 감악산 관광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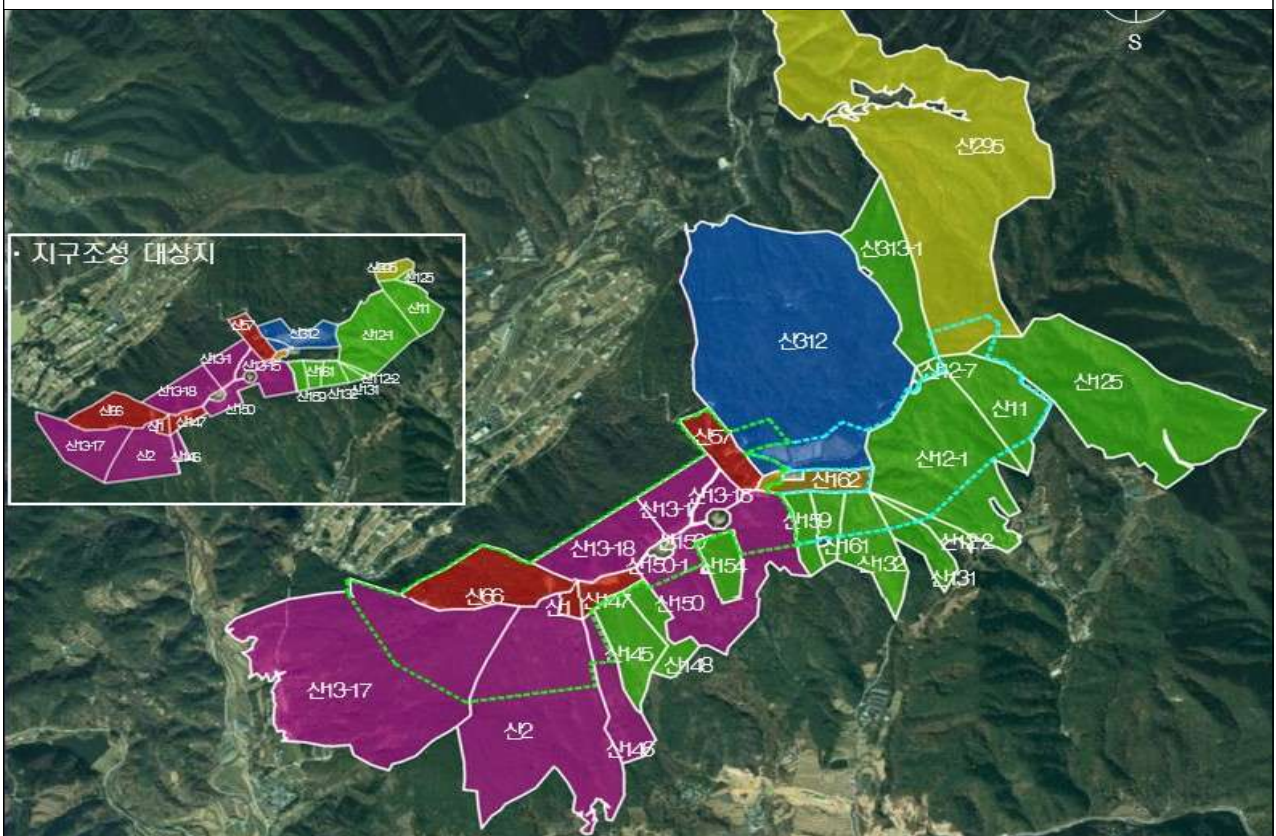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고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지구조성 계획(안)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23~'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2 - 132

제출자

거창군수

I 의의와 필요성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인('23~'27년) 공유재산 정책 방향 수립을 통한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공유재산 운영 건전성 제고 및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2. 필요성

- 전략적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공유재산관리 혁신 추진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과 재산 활용 내실화 도모
-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가치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기계획 수립 필요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II 공유재산관리 기본방침



○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및 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맞도록 운영함을 우선하며 소극적 관리를 탈피한 개발·활용 등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율성 증대
- 주민복지 수요 증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 취득과 처분의 균형 맞추어 추진
-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한 관리와 처분 및 사용허가·대부,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군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

○ 공유재산 취득은 행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한 재산의 취득 제한

III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1.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사용허가	36	71.38	36	72.81	36	74.26	36	75.75	36	77.26	2
	대 부	489	120.54	489	122.95	489	125.41	489	127.92	489	130.48	2
	취 득	7	21,638.79									
	처 분											
특별 회계	사용허가											
	대 부											
	취 득	1	11,400.00									
	처 분											
일반 회계	사용허가	36	71.38	36	72.81	36	74.26	36	75.75	36	77.26	2
	대 부	489	120.54	489	122.95	489	125.41	489	127.92	489	130.48	2
	취 득	6	10,238.70									
	처 분											

2. 공유재산 관리 · 처분에 따른 수입금 징수 및 관리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사용료	3	51.83	33	19.54	36	71.37	36	72.80	36	74.26	36	75.74	36	77.25
대부료	15	1.42	467	118.44	481	119.89	481	122.26	481	124.71	481	127.20	481	129.75
매각대금														
변상금	42	0.91	63	1.78										

첨부1

2023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내역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사용허가	36	71.38	36	72.81	36	74.26	36	75.75	36	77.26	2
	대 부	489	120.54	489	122.95	489	125.41	489	127.92	489	130.48	2
	취 득	7	21,638.79									
	처 분											
특별 회계	사용허가											
	대 부											
	취 득	1	11,400.00									
	처 분											
일반 회계	사용허가	36	71.38	36	72.81	36	74.26	36	75.75	36	77.26	2
	대 부	489	120.54	489	122.95	489	125.41	489	127.92	489	130.48	2
	취 득	6	10,238.70									
	처 분											

2. 사용허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	71.38	36	72.81	36	74.26	36	75.75	36	77.26	100.0	2
재무과	13	13.76	13	14.04	13	14.32	13	14.60	13	14.89	36.11	2
산림과	7	51.88	7	52.92	7	53.98	7	55.06	7	56.16	19.44	2
농업기술센터	14	5.67	14	5.78	14	5.90	14	6.02	14	6.14	38.89	2
수도사업소	2	0.06	2	0.06	2	0.06	2	0.06	2	0.06	5.56	2

나. 회계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	71.38	36	72.81	36	74.26	36	75.75	36	77.26	100	2
특별회계												
일반회계	36	71.38	36	72.81	36	74.26	36	75.75	36	77.26	100	2

3. 대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89	120.54	489	122.95	489	125.41	489	127.92	489	130.48	100	2
인구교육과	1	0.08	1	0.08	1	0.08	1	0.08	1	0.09	0.20	2
재무과	13	37.29	13	38.04	13	38.80	13	39.57	13	40.36	2.66	2
환경과	1	1.53	1	1.56	1	1.59	1	1.62	1	1.66	0.20	2
산림과	101	5.09	101	5.19	101	5.30	101	5.40	101	5.51	20.65	2
농업기술센터	1	2.32	1	2.37	1	2.41	1	2.46	1	2.51	0.20	2
거창읍	236	56.18	236	57.30	236	58.45	236	59.62	236	60.81	48.26	2
주상면	13	0.5	13	0.51	13	0.52	13	0.53	13	0.54	2.66	2
웅양면	18	1.98	18	2.02	18	2.06	18	2.10	18	2.14	3.68	2
고제면	29	4.02	29	4.10	29	4.18	29	4.27	29	4.35	5.93	2
북상면	10	1.09	10	1.11	10	1.13	10	1.16	10	1.18	2.04	2
위천면	4	0.65	4	0.66	4	0.68	4	0.69	4	0.70	0.82	2
마리면	6	0.78	6	0.80	6	0.81	6	0.83	6	0.84	1.23	2
남상면	6	0.31	6	0.32	6	0.32	6	0.33	6	0.34	1.23	2
남하면	2	0.16	2	0.16	2	0.17	2	0.17	2	0.17	0.41	2
신원면	8	1.99	8	2.03	8	2.07	8	2.11	8	2.15	1.64	2
가조면	27	3.95	27	4.03	27	4.11	27	4.19	27	4.28	5.52	2
가북면	13	2.62	13	2.67	13	2.73	13	2.78	13	2.84	2.66	2

나. 회계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89	120.54	489	122.95	489	125.41	489	127.92	489	130.48	100	2
특별회계												
일반회계	489	120.54	489	122.95	489	125.41	489	127.92	489	130.48	100	2

4. 취득·처분 계획

가. 취득 계획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취 득 (예정)연도	부서명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7건		839,219	21,638.70		
1	2023년	미래 전략과	특별회계	토지 지장물	남상면 대산리 산147 외 77	대	303,722	11,400	거창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속비 사업
2	2023년	산림과	일반회계	토지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378-1	대	1,061	20	주차장 조성	
	2023년	산림과	일반회계	토지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378-2	하천	492	0.7	주차장 조성	
	2023년	산림과	일반회계	토지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378-3	답	1,658	21	주차장 조성	
3	2023년	산림과	일반회계	토지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11	임	125,355	47	감악산무장애 나눔길조성	
	2023년	산림과	일반회계	토지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12-1	임	358,381	150	감악산무장애 나눔길조성	
4	2023년	산림과	일반회계	토지 건물	거창읍 상림리 산21-7 부근	임	48,550	10,000	상림리 도시숲 조성	

나. 처분 계획 : 없음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1. 총괄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건, %)

구 분	영구시설물 축조					연평균 증감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	1	-	-	-	-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장기사용 허가 등	32	무상									
양 여	-	-	-	-	-		-	-	-	-	-
사용료 등 감면	32	무상									

2. 항목별 세부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m²)

일련 번호	특례(예정) 연도	부서명	재산표시(토지)			시설물 종류	축조목적 (관련근거)	허가등 기간	갱신 가능 기간	허가조건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1	2024	미래 전략과	신원면 과정리 253-5	학	2,129	건물	신원면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어울림센터 신축	-	-	-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 사용료·대부료 감면 자료 참고

다. 양여 : 없음

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예정) 연도	부서명	재 산 표 시				감면 대상자	부과 금액	감면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5건			16,744.7		무상		
1	2023년	행정과	건물	거창읍 공수들4길 41		316	새마을	무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2	2023	재무과	토지 건물	거창읍 송정리 21	대	225	제6128부대예비군 거창지역대	무상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3	2023	재무과	토지 건물	거창읍 송정리 21	대	114	제6128부대예비군 거창기동대	무상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일련 번호	특례(예정) 연도	부서명	재 산 표 시				감면 대상자	부과 금액	감면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4	2023	재무과	토지 건물	거창읍 송정리 21	대	211	제6128부대예비군 거창읍대	무상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5	2023	재무과	토지 건물	거창읍 송정리 21	대	108	한국자유 총연맹 거창군지회	무상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6	2023	재무과	토지 건물	거창읍 송정리 21	대	132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	무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7	2023	재무과	토지 건물	거창읍 송정리 21	대	32	거창군 공무직지회	무상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8	2023	재무과	토지	거창읍 상림리 64-1	대	33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	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시행령 제30조의2	
9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53.2	강**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운영세칙」 제27조	
10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36.1	박**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운영세칙」 제27조	
11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53.2	최**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운영세칙」 제27조	
12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36.1	정**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운영세칙」 제27조	
13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36.1	유**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운영세칙」 제27조	
14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54.8	이**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운영세칙」 제27조	
15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36.1	전**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일련 번호	특례(예정) 연도	부서명	재 산 표 시				감면 대상자	부과 금액	감면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운영세칙」 제27조	
16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36.1	박**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운영세칙」 제27조	
17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53.2	김**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운영세칙」 제27조	
18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36.1	서**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운영세칙」 제27조	
19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42.5	배**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운영세칙」 제27조	
20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36.1	장**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운영세칙」 제27조	
21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53.2	이**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운영세칙」 제27조	
22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54.8	이**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운영세칙」 제27조	
23	2023	경제 교통과	건물	거창읍 중앙로 140		54.4	한**	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운영세칙」 제27조	
24	2023년	안전 총괄과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59-1	대	5,626	거창소방서	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료 감면)	
25	2023년	안전 총괄과	토지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12	답	349	웅양 119 지역대	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료 감면)	
26	2023년	안전 총괄과	토지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13	답	4,094	웅양 119 지역대	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료 감면)	

일련 번호	특례(예정) 연도	부서명	재 산 표 시				감면 대상자	부과 금액	감면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27	2023년	안전 총괄과	토지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14	답	633	웅양 119 지역대	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로 감면)	
28	2023년	안전 총괄과	토지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509	대	2,506	위천 119안전센터	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로 감면)	
29	2023년	안전 총괄과	토지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67-6	대	1,026	가조 119안전센터	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로 감면)	
30	2023년	주상면	건물	주상면 주곡로 655		86.7	주상·웅양·고제면대 (박**)	무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	
31	2023년	남하면	건물	남하면 무릉리 1070		181	남하면 주민자치회	무상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32	2023년	남하면	건물	남하면 무릉리 1070		100	고운가람 지역아동센터 (박**)	무상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1. 일반재산의 개발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개발 (예정) 연도	부서명	재 산 표 시				개발 방법 (종류)	위탁 기간	개발 사업규모				개발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예산	면적	지하	지상		
계			77건			303,722			11,400	303,722				
1	2025	미래 전략과	공장 용지	남상면 대산리 산147외 77	대	303,722	신탁 (분양형)	10년	11,400	303,722			산업입지법 (법 제43조의3)	

2. 일반재산의 출자 : 내용없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사용료	3	51.83	33	19.54	36	71.37	36	72.80	36	74.26	36	75.74	36	77.25
대부료	14	1.402	475	172.00	489	120.54	489	122.95	489	125.41	489	127.91	489	130.47
매각대금														
변상금	42	0.91	63	1.78										

2. 항목별 징수 계획

가. 사용료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계	3	51.83	33	19.54	36	71.37	36	72.80	36	74.26	36	75.74	36	77.25
재무과	1	0.02	12	13.74	13	13.76	13	14.04	13	14.32	13	14.60	13	14.89
산림과	2	51.81	5	0.07	7	51.88	7	52.92	7	53.98	7	55.06	7	56.16
농업기술센터			14	5.67	14	5.67	14	5.78	14	5.90	14	6.02	14	6.14
수도사업소			2	0.06	2	0.06	2	0.06	2	0.06	2	0.06	2	0.06

나. 대부료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계	14	1.402	475	172.00	489	120.54	489	122.95	489	125.41	489	127.91	489	130.47
인구교육과			1	0.08	1	0.08	1	0.08	1	0.08	1	0.08	1	0.09
재무과			13	37.29	13	37.29	13	38.04	13	38.8	13	39.57	13	40.36
환경과			1	5	1	1.53	1	1.56	1	1.59	1	1.62	1	1.66

구분	미징수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산림과			101	2	101	5.09	101	5.19	101	5.3	101	5.4	101	5.51
농업기술센터			1	54.6	1	2.32	1	2.37	1	2.41	1	2.46	1	2.51
거창읍	13	1.40	223	54.78	236	56.18	236	57.3	236	58.45	236	59.62	236	60.81
주상면			13	1.98	13	0.5	13	0.51	13	0.52	13	0.53	13	0.54
웅양면			18	4.02	18	1.98	18	2.02	18	2.06	18	2.1	18	2.14
고제면			29	1	29	4.02	29	4.1	29	4.18	29	4.27	29	4.35
북상면			10	0.65	10	1.09	10	1.11	10	1.13	10	1.16	10	1.18
위천면			4	0.78	4	0.65	4	0.66	4	0.68	4	0.69	4	0.7
마리면			6	0.31	6	0.78	6	0.8	6	0.81	6	0.83	6	0.84
남상면			6	0.16	6	0.31	6	0.32	6	0.32	6	0.33	6	0.34
남하면	1	0.002	1	0.16	2	0.16	2	0.16	2	0.17	2	0.17	2	0.17
신원면			8	3.95	8	1.99	8	2.03	8	2.07	8	2.11	8	2.15
가조면			27	2.62	27	3.95	27	4.03	27	4.11	27	4.19	27	4.28
가북면			13	2.62	13	2.62	13	2.67	13	2.73	13	2.78	13	2.84

다. 매각대금 : 없음

라. 변상금

1) 징수계획

(단위 : 천,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계	42	0.91	63	1.78										
산림과	42	0.91	58	1.32										
거창읍			4	0.44										
위천면			1	0.02										

2) 제고방안

구분	변상금 부과 주요 사유	조치계획(대책)	비고
신림과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 유희지 및 미대부 재산 수시 점검 •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거창읍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위천면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3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기관과 연계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나. 위탁 참여인원 : 5명(예정)

다. 위탁사무

-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사업 중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업무 수행
-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라. 위탁기간 : 2023. 3. 1. ~ 2025. 12. 31.(2년 10개월)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바. 수탁자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지정 통합형 거점학교,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환교육 지원센터

바.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특수교육 기관에 소속된 장애학생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특수교육기관이 가진 전문성으로 체계화된 직업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도모 기대

나.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p.93~94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2. 12월 정례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3. 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1월 중

라. 소요예산(2023년 기준) : 33,746천원(국 16,873, 도 5,062, 군11,811)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마.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2023년 장애인일자리지원(특수교육-복지연계형) 위탁 추진계획

-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과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3. 3. 1. ~ 2025. 12. 31.(2년 10개월)
- 추진방법 : 민간위탁(공모)
- 위탁 참여인원 : 5명(예정)
 - ↳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 중 일부사업인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사업에 한하여 위탁 운영
- 사업비 : 33,746천원(국 16,873, 도 5,062, 군11,811)
 -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 사업대상 :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의 2023년 기준 전공과 학생
 -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한 시점부터 참여 가능



근무조건

- 근로내용 :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과 연계한 업무
 - ※ 도서관 사서보조, 환경정리, 기타 업무 보조 등
- 근로조건 및 보수(보건복지부 복지일자리사업과 동일 지원)
 - 근무시간 : 주 14시간이내(월 56시간 이내, 1일 5시간이내)
 - 월보수액 : 월 538,720원(퇴직금 없음)
 - 가입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 지원기준 : 1인당 월538,720원, 운영비 월 23,690원



위탁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2. 12월 정례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3. 1월
 - 위탁기간 : 2023. 3. 1. ~ 2025. 12. 31.(2년 10개월)
 - 수탁대상 기관 : 특수교육 기관
 -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거점학교, 전환교육지원센터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1월 중



기대효과

- 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로 통합·배치되어 직업현장실습과 동시에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제공
- 특수교육기관의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활용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가능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등

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4.]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III. 일자리 유형별 사업운영

2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사업정의

- 참여형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연계성을 통하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022년 기존 전공과 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 근로조건 및 보수: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월 612,960원

○ 운영비: 1인 월 23,600원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종료 시기를 임의로 조절하여 선발할 수 없음.

○ 사업규모: 14,844명(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주요업무: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III 참여유형별 사업운영

93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②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사도에서는 지역별 사업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

○ 사도 또는 사군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 단, 지역여건상 위탁이 어려운 경우 사·도 또는 사군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의 위탁은 본 안내 책자 p65 「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를 참고하여 위탁

참고 특수교육기관의 정의 및 종류

특수교육기관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명시된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지정 종합형 거점학교,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환 교육지원센터 등을 의미함

①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초·중·고교교육법 제55조)

②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과목·과목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급(초·중·고교교육법 제56조)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구,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관련교육 등을 담당

④ 종합형 거점학교: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차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전일제 직업 등 당해 지역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지정

⑤ 전환교육지원센터: 졸업 후 장애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해당 과목을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 운영되는 전환교육 전문기관

94